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주요정책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을 공지합니다.

I. 일반원칙 – 고객이익우선

1.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3.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II.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1.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외의 자에게 공유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 (준법감시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4호에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III.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

1. 법 제174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따른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등 포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3.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4.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로 지정한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IV.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1.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호의 정보
 - ①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총액과 증권에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따라제공의동의를받거나, 제33조의2에따른 전송요구를받은개인신용정보
 - ⑤ 기타 이해상충발생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전의 정보 중 다음 각호의 정보
 - ①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 운용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우려가 없는 정보
 -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정보
 - ③ 기타 이해상충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V. 정보교류 차단대상부문 및 정보의 종류

1. 고유재산 운용부문: 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2. 집합투자재산 운용부문: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3.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

V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지정기준

1. 법 제174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따른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등 포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2. 제1호의 미공개 주요정보에 준하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예외적교류 가능정보는 제외함)를 취득하는 경우
3. 집합투자재산 및 일임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 등 계약·사회통념상 회사가 거래를 주의·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호내지 제4호에 준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집합투자 재산에 의한 거래, 회사고유재산에 의한 거래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능.

VII.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1. 거래 유형

- 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 ②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③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2. 대응 방안

- ① 자본시장법 등에서 거래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따라야 한다.
- ② 이해상충이 우려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이해상충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여 고객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한다.